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0. 19(월)

산 업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9. 9. 30
- 나. 제안자 : 한도섭·김성숙 의원 외 10인
- 다. 회부일자 : 2009. 9. 30
- 라. 상정일자 : 2009. 10. 12(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김성숙 의원
 - 검토보고 : 산업전문위원 박명성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부족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호우로 인한 홍수 및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 인천광역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수도요금 감면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이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설치권고 대상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빗물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내지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갈되어가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홍수방재는 물론 저류된 빗물을 조경용수, 청소용수 및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빗물관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용의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을 통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지난 10월 6일 개최한 동 조례 관련 빗물 관련 전문가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 안 제9조 제4호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조문은 동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와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바, ‘요금감면 등의’를 삭제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안 제12조 제1항의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를 열린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위원 1/3 이상의 요청시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조문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참고로, 본 조례안 입법예고(9. 30 ~ 10. 9)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박희경 위원
 - 우리나라는 우수량이 많지 않고 편차 또한 크기 때문에 빗물관리시설을 사용하는 빈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
- 배영민 위원
 - 지하 유출수도 재활용하도록 병행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함.
- 강석봉 위원
 - 서울시의 경우 현재 설치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 이용 가능한 빗물량에 비해 배관, 시설의 재설치가 필요하며, 수도요금 감면방법 및 시기, 하수도사용료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빗물 이용 권고는 가능하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필요시 적지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 김을태 위원
 - 빗물관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건축분야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축물의 면적에서 제외한다면 더 많은 설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정원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수는 극소수이기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음.

○ 신영은 위원

-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비용지원이 문제없는지?
- 빗물관리시설 수질검사 계획은 무엇인지?
- 조례 개정시 향후 공원은 학교에서 독점하게 되고 시 재정에 무리를 줄 것으로 예상됨.
- 공공시설물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민간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답 변 >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서울시의 경우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시행 초기에는 많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
- 수질검사도 음용수가 아니므로 필요시 일부 항목에 대해 검사하겠음.
- 서울시의 경우 55개소의 단독건물 및 주택에 설치되어 있음.
-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요금감면도 산정할 수 있음. 아울러 위원회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함.
- 동 조례는 빗물을 잘 이용하자는 취지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으로 이용이 늘고 있음.
- 연평균 강수일이 30일로 60일 이상은 빗물관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초기 우수를 처리한 후 정원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천의 경우 문학경기장, 삼산체육관, 수도권매립지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한도섭, 박희경, 배영민, 강석봉, 강창규, 김성숙, 김을태, 신영은 위원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8명)

7. 기타특이사항

- 없 음

붙임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 :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 : 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 :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구청장,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 또는 빗물관리시설과 연계한 시설(유출지하수, 중수도 등)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4.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6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수도 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을 같은 기간 중 수도 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환경정책과장 · 물관리과장 · 공원녹지과장 · 개발계획과장 · 건축계획과장
·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장
 3. 수질 · 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빗물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최초로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분부터 적용한다.